



산학협력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체연구비 지원 제도 개선 시행 안내

1. 지체연구비 장기 미상환 과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지체연구비 사용 방지를 위해 신청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개선사유 : 지체연구비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지원기관 부도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로 인한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연구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실적인 상환 방법이 필요
 나. 적용대상: 2018. 3. 19.(월)이후 지체연구비 신규 신청과제

구분	기존	개선
신청한도	협동·위탁연구비 포함 총 연구비 100%	협동·위탁연구비 제외 서울대 연구비(현금) 50%
장기 미상환에 따른 제재조치	2013년 2월 지체연구비 지원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관리기관 간접비로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이행하지 않음	1. 연구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미상환 시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차감 ※ 지체연구비상환확약서에 관련 사항 반영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차감으로 부족 시 관리기관에서 상환
(신설) 신규신청제한	-	1. 국가R&D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는 NTIS 참여제한 기간 동안 신규 신청 제한 2. 연구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미상환 연구책임자 및 해당 과제 관리기관의 신규 신청 제한

붙임 지체연구비상환확약서 양식 1부. 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수신자 교육기구, 연구소, 부속시설, 대학주관연구소

대리 **조영임**

팀장(대) **이성은**

부장 **박상남**

부장 **박준철**

본부장 **이재선**

산학협력정책부
단장 **이미옥**

03/09
단장 **김성철**

협조자

부장 **홍성애**

시행 산학협력단
(2018.03.09.)

연구관리본부-54607

접수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1042 (2018.03.13.)

우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36동 308호 /

전화 02-880-2122

전송 02-888-2029

/ chy176@snu.ac.kr

/ 공개